비상시 전력시장운영 절차

1.0 목적

규칙 제21.1조의 규정에 의거 천재지변·전시·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전력시장에서 정상적인 전력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경우 전력시장의 운영절차를 규정함에 있다.

2.0 적용범위

- 2.1 본 절차는 다음의 각 호에 의해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경우 적용한다.
 - 1. 전력시장운영을 위한 핵심 거래시스템의 주요기능의 정지
 - 2. 전력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정상적인 전력시장가격의 결정이 불가능
 - 3. 연료의 긴급사용 등으로 비용평가위원회에 의해 확정된 연료비의 사용이불가능
 - 4. 기타 범국가적 사태로 전력시장의 운영이 불가능
- 2.2 적용대상
- 2.2.1 전력거래소
- 2.2.2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전기사업자(발전사업자, 중개사업자, 판매사업자, 구역 전기사업자 등), 자가용설비설치자, 직접구매자 등 <개정 2018.12.12.>

3.0 책임

- 3.1 전력거래소
- 3.1.1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에서 정상적인 전력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시 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전력거래 기능이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3.1.2 전력거래소는 정부에 대한 거래정지의 요청, 거래자에 대한 상황 통지, 전력 시장비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전력거래기능의 복구을 위한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3.2 발전사업자(구역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설치자, 분산에너지사업자 포함), 중개사업자 및 판매사업자(구역전기사업자, 직접구매자 포함) <개정 2018.12.12., 2025.7.10.>
- 3.2.1 발전사업자, 중개사업자 및 판매사업자 등은 전력시장에서 정상적인 전력거 대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시장이 공정성을 유지하고 거래기능이 신속히 복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2.>

3.2.2 발전사업자, 중개사업자 및 판매사업자 등은 전력시장의 공정성 유지와 거래 기능 복구를 위한 조치를 적극 수용하고 협력해야 한다.<개정 2018.12.12.>

4.0 참고자료

해당 없음.

5.0 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규칙 제1.1.2조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그외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5.1 전력거래의 정지 전력시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통한 전력거래 기능이 정지됨을 말한다.
- 5.2 전력거래정지일 전력거래가 정지된 거래일로써 최소 단위는 1일이다.
- 5.3 전력거래 정지의 해제 전력거래 정지 후 다시 전력시장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상태로의 전환 을 의미한다.
- 5.4 전력거래정지해제일 전력거래 정지가 해제되어 정상적인 전력시장의 운영이 가능한 거래일을 말 하다.
- 5.5 전력거래시스템의 기능정지 전력거래시스템의 고장 및 전력거래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통신망의 운영 불능 사태가 일정시간 이상 지속되어 전력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 5.6 대규모 부분정전 우리나라 전체 계통 내 광역정전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전력시장의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을 산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 5.7 전력거래정지일 직전 유사일
 전력거래정지일이 아닌 날로서 전력거래 정지 전 최근일 순으로 전력거래정
 지일과 전력수요패턴이 유사한 일자를 말하며, 전력거래정지일이 토요일, 일
 요일, 월요일인 경우의 유사일은 각 요일과 동일한 요일의 최근일, 그 외의
 경우에는 그 외의 요일 중 최근일을 말한다.

6.0 지침

해당 없음.

7.0 절차

- 7.1 전력거래의 정지
- 7.1.1 전력거래 정지의 요건

전력거래소는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전력거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 1. 입찰, 가격결정, 계량, 정산, 결제 등 전력시장 운영에 필수적인 주요 거래시스템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및 통신망의 고장 등으로 정상적인 전력거래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 2. 전계통 정전 또는 대규모 부분정전 사태가 발생하여 수요과 공급에 의한 시장가격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 3. 발전기 공급가능용량의 부족으로 전력시장의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여 시장가격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 4. 국가적 비상사태 발생으로 다수의 발전소가 연료의 긴급사용 등으로 비용 평가위원회에 의해 확정된 연료비용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5. 기타 범국가적 사태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전력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 7.1.2 전력거래 정지의 요청

전력거래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력거래 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아래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전력거래정지일
- 2. 주요워인 및 조치계획
- 3. 기타 전력시장의 비상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 7.1.3 전력거래 정지의 선언

전력거래소는 전력거래 기능 정지 요청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의한 전력거래 정지 명령이 있을 경우 즉시 전력거래의 정지를 선언하고 활용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해당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7.2 전력거래 정지 시 업무처리 기준
- 7.2.1 전력거래시스템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7.2.1.1 입찰시스템의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입찰이 가능한 발전기의 입찰은 우선 반영하되 입찰이 불가능한 발전기는 거래일의 가장 최근에 제출된 전력거래정지일 전일의 유효한 입찰자료의 같은 시간대 값을 적용하여 하루전발전계획 등을 수립하고 시장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발전기의 정비 개시 또는 완료 등으로 인해 전일의 유효한 입찰자료 대비 공급가능용량의 변동이 명확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1>
- 7.2.1.2 가격결정시스템의 기능이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의 기능이 복구되는 즉시 하루전발전계획 등을 수립하여 반영하되 그 기능의

복구가불가능한 경우에는 전력거래정지일 직전 유사일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전력거래정지일과 전력거래정지일 직전 유사일의 월이 다른 경우에는 월별 연료가격의 변화율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1.1.1>

- 7.2.1.3 계량시스템의 기능이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에는 규칙 제4.1.2조 및 규칙 별표7의 7.2 기준에 따라 우선 처리하되 계량시스템의 정상복구 후 정산금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분은 추가 정산한다.
- 7.2.1.4 정산시스템, 결제시스템의 기능이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산 또는 결제가 중단됨을 회원사에 공지하여야 하며, 7.5.1에 따라 조정된 일정에 맞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7.2.1.4.1 정산시스템이 복구되기 전까지 수동 정산시에는 7.4.1.3의 비상위원회에서 정한 정산금 지급기준에 따른다.
- 7.2.1.4.2 결제시스템이 복구되기 전까지 시장은행과 협의하여 시장은행 협약에 따라 처리한다.
- 7.2.2 전력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가격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7.2.2.1 전계통 정전 또는 대규모 부분정전이 발생하여 전력시장의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정전 미발생을 상정하여 예측된 전력수요 및 발전기 공급가능용량을 기준으로 하루전발전계획 등을 수립한다. 다만, 발전기 중 정전 미발생 시를 상정한 공급가능용량이 있으나 정상적인 전력공급이 불가능한 발전기의 발전계획 발전량(DAOS)은 0으로 조정한다. <개정 2021.1.1>
- 7.2.2.2 발전기 공급가능용량의 부족으로 전력시장의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한 경우 발전계획 발전량(DAOS)은 발전기가 최종 입찰한 시간대별 공급가능용량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전력시장가격은 전력거래정지일 직전 유사일의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전력거래정지일과 전력거래정지일 직전 유사일의월이 다른 경우에는 월별 연료가격의 변화율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1.1.1>
- 7.2.3 국가적 비상사태 발생으로 다수의 발전소가 연료의 긴급사용 등으로 비용평가위원회에 의해 확정된 연료비용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이처리한다.
- 7.2.3.1 비용평가위원회에서 사전 의결된 연료비용 등을 통하여 수립된 하루전발전 계획, 시장가격에 따라 정산하되 추후 해당 전력거래정지일에 대한 연료비용을 비용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의결한 경우 별표2의 대체연료사용발전기와 동일하게 정산한다. <개정 2021.1.1>
- 7.2.4 기타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전력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7.2.1 또는 7.2.3을 준용하여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7.3 전력거래 정지의 해제
- 7.3.1 전력거래 정지 해제의 요청

전력거래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력거래 정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아래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전력거래정지 해제일
- 2. 전력거래정지 해제사유
- 3. 기타 전력시장의 비상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 7.3.2 전력거래 해제의 선언

전력거래소는 전력거래소의 전력거래 정지 해제 요청에 대한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의 승인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의한 전력거래 정지 해제 명령이 있을 경우 즉시 전력거래 정지의 해제를 선언하고 활용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해당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7.4 전력시장비상위원회의 운영
- 7.4.1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비상시 신속하고 공정한 전력시장의 운영 등을 위하여 전력시장비상위원회(이하 "비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7.4.1.1 비상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력거래소 이사장으로 하며 위원은 규칙개정위원회, 비용평가위원회, 정보공개위원회, 시장감시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등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 관련 위원회의 위원(위원장 포함) 중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위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력거래정지 사유 등에 따라 그 외에서 별도 위촉할 수 있다.
- 7.4.1.2 비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지명한 다.
- 7.4.1.3 비상위원회는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 한다.
 - 1. 전력거래 정지 및 정지해제에 대한 제안 및 건의
 - 2. 전력거래 정지 및 정지해제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및 관련보고서 발행
 - 3. 전력거래정지일에 대한 전력가격 기준, 정산금 지급기준 및 산정결과 등의 결정
 - 4. 관련 기관·기구·위원회에 전력시장 복구를 위한 행정·재정·금융상의 지원을 요청 등 전력시장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각종 조치의 시행
 - 5. 기타 전력거래 정지와 관련된 중요사항
- 7.4.1.4 비상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 등 불가피한 경우 전력거래소 소속 위원이 소집할 수 있다.
- 7.4.1.5 비상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부의안건 및 관련 자료를 개최예정일의 1일 전까지 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 결의에 의한 의안 처리를 결정할 수 있다.

- 7.4.1.6 의결이 필요한 안건은 위원장 및 위원이 제안할 수 있다.
- 7.4.1.7 비상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표결시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한다. 다만, 표결결과가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7.4.1.8 전력거래소, 정부, 회원사를 대표하는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비상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을 회의시작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7.4.1.9 비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상정된 의안의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 7.4.1.10비상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의안과 함께 전력거래소에 보관하고 그 의사록을 10일 이내에 전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서면결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 7.4.1.11비상위원회와 실무협의회 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회의참석 여비, 비상위원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활동과 관련된 출장여비, 자료 분석 등에 필요한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7.4.2 전력거래소는 필요한 경우 비상위원회 산하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7.4.2.1 실무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3인 이내로 하며 규칙개정위원회, 비용평가위원회, 정보공개위원회, 시장감시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등 전력거 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 관련 위원회의 실무협의회 위원(의장 포함) 또는 전력거래정지 사유 등에 따라 그 외에서 의장의 위촉으로 비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7.4.2.2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동 간사는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지명하고, 위원이 간사를 겸할 수 있다.
- 7.4.2.3 실무협의회 소집은 의장이 한다. 다만, 의장 유고 등 불가피한 경우 전력거 래소 소속 위원이 소집할 수 있다.
- 7.5 전력거래 일정의 조정에 대한 조치
- 7.5.1 전력거래소는 전력거래정지일 기간 동안 규칙 제2.3.1조, 제2.3.8조, 제4.2.5.2조, 제4.2.5.7조, 제4.3.1조, 제4.3.2조, 제5.7.1조 및 별표4, 별표6, 별표8에서 규정된 주요 전력거래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를조정하여 운영할수 있다.
- 7.5.2 전력거래소는 7.5.1에 따라 조정된 일정을 전력거래정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모든 회원사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 7.5.3 전력거래정지 기간 동안 7.5.1의 일정에 따라 전력거래대금 등을 부담 또는 지급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으로 보지 아니한다.